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80

발의연월일: 2021. 3. 5.

발 의 자:정청래·한병도·오영환

최혜영 · 임오경 · 이규민

송갑석 · 신현영 · 장경태

이수진 · 양이원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·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.

정부의 투기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 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일벌백계 해야 함.

특히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.

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 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함.

이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

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2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"를 "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벌칙) ① 제22조를 위반한	제28조(벌칙) ①
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</u>	<u></u>
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
<단서 신설>	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
	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
	<u>다</u> - <u>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</u>
	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
	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
	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
	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
	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
	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
	원으로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